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0일(월)부터 ~ 1월 22일(수)까지입니다”

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0년 1월 22일(수)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0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0년 1월 15일(수) 오픈될 예정(2020년 1월 20일(월)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 2020. 1. 2.(목)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 장기 해외체류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19년)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 ⇒ 행정실로 제출 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교원단체총연합회	402-82-13726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해당고유번호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라북도교육청	116-82-14692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	116-83-00138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불우이웃돕기동 전북교육청	418-83-00179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0.1.20.(월)~1.22(수)까지**

- ▶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0. 1. 15. (월) 오픈 예정**
 - ▶ **2020년 1월 20일(월)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제출요함”

1.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텍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

등록하기⇒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3. 귀속년도 2019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19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종별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증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증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증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step 4. 예산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액 자료계산, 및별이 부부 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step 5. 회사에 제출 (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4. 나이스 접속⇒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19년⇒조회⇒PDF업로드⇒찾기[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2019년 연말정산 흥길동.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함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2.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붙임1]

증빙서류제출

제출기한	2020년 1월 22일(수)	
입력기간	2020년 1월 20일(월) ~ 1월 22일(수)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p>☞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탭 ⇒ 귀속년도(2019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p>☞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19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p>☞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19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p>☞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 ⇒ 귀속년도(2019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p>☞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19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p> <p>☞ 증빙서류 첨부 제출</p>
⑤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	<p>☞ 정부24 : http://www.gov.kr</p>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p>☞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p>
⑦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p>☞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19년)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풀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19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p> <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도 제출 요함”</p> <p>☞ 기타 증빙서류 제출</p>
⑧ 서약서	전교직원	[붙임 2] 작성후 출력 서명 제출

[붙임2]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19년도 연말정산시 부양자 기본공제(소득 유·무),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약국, 병원, 종교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서류 착오 제출 시 정산 후 세무서장이 기관장에게 통보함)

2020년 1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